

말레이시아의 사법체계

박 종 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특집 VII]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초법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특집을 편성하였습니다.

I. 역사 및 개요

II. 상급법원

1. 연방법원
2. 항소법원
3. 고등법원

III. 하급법원

1. 민·형사 법원(Sessions Courts)
2. 경미 사건 법원 혹은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s)

IV. 기타 법원

1. 평홀루 법원(Penghulu's Courts)
2. 원주민 법원(Native Court)
3. 아동(미성년자) 법원(The Court for Children)
4. 특별법원(The Special Court)
5. 샤리아 법원(Syariah Courts)

V. 법원(法源)

1. 역사
2. 연방법과 주법
3. 보통법

I. 역사 및 개요

말레이시아에는 오래 전부터 이슬람 법과 불문의 관습법을 활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존재하였다. 이 법원의 판사들은 술탄에 의하여 임명되었는데,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은 술탄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식민지배하에서 영국의 세속적인 성문법이 말레이시아에 이식됨에 따라 이슬람 법과 술탄의 영향은 약화되었다. 특히 1900년대 초반에는 사법제도 변경을 통하여 재판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던 술탄의 권한을 없애고 영국 런던의 추밀원으로 상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00년대 중반에는 말레이시아 내에 항소법원을 설립하였으며, 1963년 말레이 연방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연방법원이 항소법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추밀원 상소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었고, 1985년 1월에 이르러 대법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 대법원은 1994년 법원조직 개편과정에서 연방법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연방법원 등을 포함한 상급법원들이 있으며, 그와는 별도로 하급법원도 존재한다. 법원의 체계상 가장 상위의 법원으로부터 하위의 법원 순으로 나열해 보면, 상급법원으로는 연방법원(Federal Court), 항소법원(Court of Appeal), 고등법원(High Court)이 있고, 하급법원으로는 민·형사 법원(Sessions Courts)과 경미 사건 법원(Magistrates' Courts)이 있다. 연방법원장(the Chief Justice of the Federal Court of Malaysia), 항소법원장(the 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 고등법원장 2인(the Chief Judge of Malaya, the Chief Judge of Sabah and Sarawak)이 말레이시아 법원체계상 가장 강력한 직위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입법부, 행정부와 분리, 독립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이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 상급법원

1. 연방법원

1) 설립 및 관할

연방법원(Mahkamah Persekutuan Malaysia)은 1957년 말라야의 독립 중에 최고법원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1994년 6월 24일에 현재의 이름, 즉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으로 개칭되었다.

연방법원은 말레이시아의 최고 법원이다. 연방법원은 일반적으로 항소법원에서 상소된 모든 민사, 형사사건들을 관할한다. 다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이 원심인 사건들에 한하여 연방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한다. 그리고 연방법원은 연방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다른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헌법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특히 국왕이 헌법조항에 관하여 일어난 현재의 헌법문제 혹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 분명한 헌법문제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방법원은 개원하여 요청받은 헌법문제에 대한 조언을 정해야만 한다.¹⁾

연방법원은 연방 의회나 주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부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주들 사이의 분쟁이나 연방과 주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심사한다.²⁾

2) 구성 및 임명

연방법원은 수석재판관(the Chief Justice of the Federal Court)이라 불리어지는 연방법원장(the President of the Court),³⁾ 그리고 항소법원장(the 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과 2인의 고등법원장들(수석판사들 the Chief Judges of the High Courts) 및 기타 재판관들 11인으로 구성된다.⁴⁾ 이들은 기본적으로 내각 수상의 조언과 통치자 회의(the Conference of Rulers)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왕이 임명한다.⁵⁾ 연방법원장을 제외한 재판관들의 임명에 있어 내각 수상은 국왕에게 조언하기 이전에 연방법원장과 협의를 한다.⁶⁾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레이시아의 시민이어야 하며, 둘째로 임명 이전 10년 동안 해당 법원의 변호인으로 일을 했거나 연방 혹은 주의 법무부의 일원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⁷⁾

법원장급이 아닌 연방법원의 재판관들의 숫자는 국왕(Yang di-Pertuan Agong)의 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장급이 아닌 연방법원의 재판관들은 연방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각각의 임기나 활동 목적을 지정하여 말레이시아 고

1) 헌법 제130조.

2) 헌법 제128조(1) (a), (b).

3) 역대 연방법원장은 다음과 같다. Abdul Hamid Omar 1994, Mohamed Eusoff Chin 1994 - 2000, Mohamed Dzaidin Abdullah 2000 - 2003, Ahmad Fairuz Abdul Halim 2003 - 2007, Abdul Hamid Mohamad 2007 - 2008, Zaki Tun Azmi 2008-2011, Tun Arifin Zakaria (2011 - 현재).

4) 헌법 제122조(1).

5) 헌법 제122조B(1).

6) 헌법 제122조B(2).

7) 헌법 제123조.

등사법직을 보유한 자들 중에서 임명한다.⁸⁾ 특히 법원장급이 아닌 연방법원의 재판관들은 주로 항소법원의 판사들 중 선출된다. 항소법원장이 아닌 항소법원 판사들의 경우, 연방법원장이 특정 사건에서 정의 구현을 위하여 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목적에 한해서 연방법원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다.⁹⁾

2011년 가을 현재 연방법원에는 11인의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방법원장 Zaki Azmi, 항소법원장 Alauddin Mohd Sheriff, 말라야¹⁰⁾ 고등법원장(Chief Judge of Malaya) Arifin Zakaria, 사바 및 사라와크¹¹⁾ 고등법원장(Chief Judge of Sabah and Sarawak) Richard Malanjum 및 법원장이 아닌 재판관들 Hashim Yusoff, Zulkefli Ahmad Makinudin, Mohd Ghazali Mohd Yusoff, James Foong Cheng Yuen, Md Raus Sharif, Abdull Hamid Embong, Suriyadi Halim Omar 등이 연방법원의 업무를 보고 있다. 이들 중 연방법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항소법원의 전·현직 판사 출신이다.

3) 심리 및 기타사항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은 3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며, 헌법해석 등 특별사건에서는 5인 혹은 7인 재판부를 구성하여 심리를 할 수 있다. 1인 심리도 가능하지만 이는 연방법원에 의하여 반복될 수 있다. 심리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구두 변론과 문서 변론을 할 수 있다.

의회는 입법을 통하여 연방법원 재판관들의 보수와 임기를 정한다.¹²⁾ 정년은 일반적으로 65세이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현직 재판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보수나 임기를 변경할 수는 없다.¹³⁾ 연방법원 재판관들이 정년퇴임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행한 어떠한 것에 대하여도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없다.¹⁴⁾

2. 항소법원

8) 헌법 제122조(1A).

9) 헌법 제122조(2).

10) 말레이 반도 지역.

11) 보르네오 섬 지역.

12) 헌법 제125조(6), (6A).

13) 헌법 제125조(7).

14) 헌법 제125조(8).

1) 설립 및 관할

항소법원(Mahkamah Rayuan)은 연방법원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말레이시아의 두 번째 최상급법원이다. 1985년 1월 1일부터 상소과정에 있어 영국의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대한 항소제도(Privy Council appeals to the United Kingdom)가 폐지됨에 따라 사법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1994년 항소법원이 신설되었다.

항소법원은 민사, 형사사건에 있어 고등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상소를 담당한다. 그리고 하급법원에서 시작된 사건들의 최종심 역할을 한다.

2) 구성 및 임명

항소법원에는 항소법원장(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을 둔다. 그리고 국왕의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32인의 다른 판사들을 둔다.¹⁵⁾ 이들은 기본적으로 내각 수상의 조언과 통치자 회의(the Conference of Rulers)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왕이 임명한다.¹⁶⁾ 재판관들의 임명에 있어 내각 수상은 국왕에게 조언하기 이전에 연방법원장과 협의를 한다.¹⁷⁾ 판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레이시아의 시민이어야 하며, 둘째로 임명 이전 10년 동안 해당 법원의 변호인으로 일을 했거나 연방 혹은 주의 법무부의 일원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¹⁸⁾

항소법원장이 특정 사건에서 정의 구현을 위하여 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등법원장과 상의한 이후 고등법원 판사를 그 목적에 한해서 항소법원 판사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¹⁹⁾

3. 고등법원

1) 설립 및 관할

고등법원은 말레이시아에서 법원 위계상 연방법원, 항소법원 아래에 위치하는 상급법원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2개의 등위의 고등법원이 존재한다. 그것은 말라야 고등법원(the High Court in Malaya)과 사

15) 헌법 제122조A(1).

16) 헌법 제122조B(1).

17) 헌법 제122조B(2).

18) 헌법 제123조.

19) 헌법 제122A조(2).

바 및 사라와크 고등법원(the High Court in Sabah and Sarawak)이다.²⁰⁾ 말라야 고등법원은 말레이반도 지역을 관할로 하며, 사바 및 사라와크 고등법원은 보르네오 섬 지역을 관할로 한다. 실제로 후자의 고등법원은 1994년 이전에는 보르네오 고등법원(the High Court in Borneo)이라 칭해졌다.²¹⁾

말라야 고등법원은 쿨라룸푸르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말레이 반도 전역에 지원을 설치하고 있다. 비슷하게 사바 및 사라와크 고등법원은 쿠칭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사바 및 사라와크 전역에 지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13개의 주에 22개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작은 마을 등에 순회하기도 한다.

두 개의 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하급법원들에 대한 감시자, 지휘자, 교정자의 역할을 한다. 그에 따라 하급법원들에서의 민사·형사사건들에 대한 상소를 맡는다.

고등법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관할권의 제한이 없다. 이혼 소송, 기업 파산소송, 후견 소송, 유언 집행 소송, 가처분 소송 모두를 담당한다.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관할권의 제한이 없다. 다만 이슬람 법 관할 사건은 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제1심을 맡는다.

한편 사법심사의 신청이 고등법원에 접수된다.

2) 구성 및 임명

각각의 고등법원은 법원장과 4인 이상의 판사들로 구성된다.²²⁾ 고등법원 판사들의 숫자는 국왕이 별도의 명령에 의하여 정하지 않는 이상 특정 숫자를 초과하지 못한다. 말라야 고등법원의 판사들의 숫자는 6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바 및 사라와크 고등법원의 판사들의 숫자는 1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²³⁾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내각 수상의 조언과 통치자 회의(the Conference of Rulers)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왕이 임명한다.²⁴⁾ 재판관들의 임명에 있어 내각 수상은 국왕에게 조언하기 이전에 연방법원장과 협의를 하는데,²⁵⁾ 특히 고등법원장의 임

20) 헌법 제121조(1) (a), (b).

21) 그리고 1969년 이전에는 싱가포르 고등법원도 말레이시아 법원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었다.

22) 헌법 제122조AA(1).

23) 헌법 제122조AA(1) (a) (b).

24) 헌법 제122조B(1).

25) 헌법 제122조B(2).

명 시에는 내각 수상이 다른 고등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바 및 사라와크 고등법원장의 임명 시에는 사바 및 사라와크 주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²⁶⁾ 판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레이시아의 시민이어야 하며, 둘째로 임명 이전 10년 동안 해당 법원의 변호인으로 일을 했거나 연방 혹은 주의 법무부의 일원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²⁷⁾

말라야 고등법원과 사바 및 사라와크 고등법원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왕은 내각 수상의 조언 및 연방법원장과의 협의에 따라 고등법원의 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법관을 명령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²⁸⁾ 이러한 임명에 있어서는 특정 기간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법관이 임명됨이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임명된 사법관은 고등법원의 판사와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사법관이 행한 어떠한 것도 판사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정당성을 갖게 된다. 또한 사법관은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누리는 똑같은 권한과 면책특권을 누리게 된다.²⁹⁾

고등법원에서는 단독판사 혹은 사법관(judicial commissioner) 1인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된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만, 사법관은 2년 임기로 임명된다.

Ⅲ. 하급법원

1. 민·형사 법원(Sessions Courts)

Sessions Courts는 영국의 사계 법원(Quarter Sessions)과 유사하다. 영국의 사계 법원은 사계절에 한 번씩 일반적인 사건들을 다루었던 법원이다. 이처럼 Sessions Courts는 민사와 형사에 관한 일반적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가진다.

먼저 Sessions Courts는 사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범죄들에 대한 재판의 관할권을 갖는다. 그 재판은 Sessions Courts의 판사들에 의하여 주재된다.

또한 Sessions Courts는 소송가액이 말레이 링기트(Ringit of Malaysia: RM)

26) 헌법 제122조B(3).

27) 헌법 제123조.

28) 헌법 제122조AB(1).

29) 헌법 제122조AB(1).

25,000을 초과하지만 말레이 링기트 250,000을 넘지 않는 모든 민사사건들을 관할한다.

Sessions Courts의 판사들의 임명은 1948년 하급법원법(the Subordinate Court Act 1948)의 제59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은 수석 판사들의 제언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

2. 경미 사건 법원 혹은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s)

Magistrates' Courts는 1급과 2급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1급 Magistrates' Courts의 치안판사(Magistrates)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2급 Magistrates' Courts의 치안판사(Magistrates)는 현재 일반적으로는 임명되지 않는다. 1급 Magistrates' Courts는 형사와 민사사건들 모두에 있어 관할권을 가진다.

형사사건에 있어 1급 Magistrates' Courts는 최고 형량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나 벌금에 의하여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치안판사는 5년 이하의 징역형, 10,000 말레이 링기트 이하의 벌금형, 12회 이하의 채적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민사 사건에 있어 1급 Magistrates' Courts는 소송가액이 25,000 말레이 링기트 이하인 모든 민사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가진다.

또한 Magistrates' Courts는 Penghulu's Courts로부터의 상소사건을 담당한다.

Magistrates' Courts의 치안판사들은 1948년 하급법원법(the Subordinate Court Act 1948)의 제78항에 따라 임명된다. 동 조항에 따르면 수석 판사들의 제언에 따라 주 정부가 각각 치안판사들을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 지역 내에서는 수석 판사의 제언에 따라 국왕이 치안판사들을 임명한다.

IV. 기타 법원

1. 평홀루 법원(Penghulu's Courts)

평홀루(Penghulu)는 말레이 마을의 수장을 의미한다. 보다 공식적으로는 최하위 행정단위인 Mukim의 수장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행정관이다. 하지만 이들은 일정한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사법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소송가액이 50 말레이 링기트를 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아시아인이고 말레이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관할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벌금이 50 말레이 링기트를 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을 관할한다.

Penghulu's Courts의 관할에 대하여는 제1급 치안판사에게 상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는 치안판사 법원을 원심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원주민 법원(Native Court)

사바와 사라왁 지역에는 Penghulu's Courts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역, 즉 보르네오 섬 지역의 토착민들인 이반족, 카다잔족 등의 소수 민족들은 Penghulu's Courts와 구분되는 별도의 토착법원을 가지고 있다.

소위 원주민 법원(Native Courts)이라 불리는 이 법원에서는 원주민부족의 장에게 재판관의 권한이 부여되며, 경미한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 한정되어 재판을 한다. 특히 원주민 법과 관습에 관한 문제들을 관할한다.

3. 아동(미성년자) 법원(The Court for Children)

이전에 청소년법원이라 칭해지던 아동(미성년자) 법원은 일반적인 청소년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갖는다. 다만 사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죄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관할을 갖는다. 아동(미성년자) 법원의 사건들은 2001년 아동법(Child Act 2001)의 규율을 받는다. 여기서 아동(미성년자)이라 함은 18세 이하의 자를 의미한다.

4. 특별법원(The Special Court)

특별법원은 통치자의 범죄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1993년에 설립되었다. 여기서 통치자에는 국왕(Yang di-Pertuan Agong), 말레이시아의 군주제 주들의 술탄들, 주지사(Yang di-Pertua Negeri), 주의 군주(Yang di-Pertuan Besar) 등이 포함된다. 이 법원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통치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능력에 대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소송으로부터도 면책되었었다.

5. 샤리아 법원(Syariah Courts)

주의 이슬람법(Sharia)에 관한 사건들에 국한하여 관할을 가지는 법원이 샤리아 법원이다. 샤리아 법원은 무슬림에 관련된 사안들만 관할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5,000 말레이 링깃 이하의 벌금형, 6회 이하의 채찍형만을 부과할 수 있다.

샤리아 법원은 양 당사자들이 모두 이슬람 교도인 민사사건(가족법 사안 포함)과 이슬람 교도의 이슬람교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에 대하여 이슬람 법이나 말레이 관습법을 적용한다.

샤리아 법원은 주법이나 주헌법에 따라서 설립되고 운영되므로 관할,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도 주법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관할의 경우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헌법상 고등법원과 하급법원이 샤리아 법원의 관할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두 이슬람 교도인 사건에서는 샤리아 법원이 원심으로서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V. 법원(法源)

1. 역사

1957년의 독립 이전에 말레이시아는 법원(法源)에 있어서도 영국에 크게 의존하였다. 즉 영국의 법률 중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법률들은 말레이시아 입법기관의 입법에 의하여 혹은 단순하게 직접 말레이시아의 사법적 문제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실효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은 호주와 인도 등 다른 사법관할의 법률에 기초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형사법, 형사소송법은 인도의 형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비슷하게 말레이시아의 연방계약법은 인도의 그것을 답습한다. 말레이시아의 토지법은 호주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은 말레이시아의 최고법이다. 그것은 법률,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정치 활동에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은 정부, 국왕을 정의하며, 그들의 권한을 설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다.

2. 연방법과 주법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의 준거로 사용되는 법에는 우선 연방법과 주법을 들 수 있다. 연방법은 연방의회, 즉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에 의하여 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법은 말레이시아 전 지역에 적용된다.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의회 법률(Acts)로 알려져 있다.

주법은 주 입법위원회(Dewan Undangan Negeri)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법은 입법이 이루어진 주에만 적용된다. 주법은 종종 법률 혹은 명령이라 불리운다. 말레이시아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연방법은 그와 충돌되는 내용의 주법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특히 연방법은 이슬람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이 창설된 이후, 사바와 사라와크 주들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조항들이 헌법 개정의 과정을 통하여 헌법에 편입되었다. 연방법의 일부는 이들 주에 있어서는 다른 주들과는 다른 의미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민, 토지, 자연자원관리 등과 같은 주제에 관련된 연방법들은 이들 주에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었다.

3. 보통법

말레이시아의 법은 기본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성문법은 헌법과 법률로 제정된 법을 의미한다. 불문법은 어떠한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불문법은 사건 결정에서 드러난다. 불문법은 주로 보통법 혹은 판례법이라 불린다. 특정한 상황을 지배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말레이시아 판례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만약 그 경우에 말레이시아 판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국 판례법이 적용된다. 실제로 호주, 인도, 싱가포르 판례들이 주요한 법원으로 사용된 예들이 있다.

영국법 혹은 보통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은 성문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 제5절에서는 특정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비슷하게 민사연방법(Civil Law Act) 제3절 및 제5절에서도 사건에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말레이시아 민사 사건에 영국 보통법과 형평의 규칙들, 그리고 영국 성문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07년 연방대법원장인 Ahmad Fairuz Abdul Halim은 이러한 관행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원(法源)에 대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즉, 말레이시아 연방이 독립을 한 지 약 50년이 지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여전히 영국의 보통법에 의존하여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영국의 보통법을 이슬람 법이론이나 이슬람법으로 대체하여 사법적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변호사 위원회(Malaysian Bar Council)는 영국의 보통법은 이미 말레이시아 법 시스템의 일부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그 위원회는 영국의 보통법을 다른 이슬람법으로 대체해야 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선례구속의 원칙은 말레이시아 법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상급법원의 결정들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이다.